

[저작권침해손해] 공연사진 무단사용행위 저작권침해 인정 -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사안의 개요

- (1) 풍선 공연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침해 인정, 벌금 50만원 형사처벌
-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손해액 2500만원 청구
- (3) 1심 법원 - 손해액 30만원 인정
- (4) 저작권자 항소

저작권법 손해배상 관련 규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

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권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권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권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권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공연사진의 무단사용과 관련된 (1) 저작권침해로 입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

(2) 침해자의 이익액, (3)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산정하기 어려움

법정 손해배상 주장 - 침해 행위 전 등록 없음, 적용 불가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으로 30만원 인정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및 기타 동종 및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액과의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진은 E의 공연 과정 중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E의 예술 및 공연 활동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E은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E의 공연 사진을 이용료 내지 사용 대가를 받고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상업적인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구매대행하면서 알리바바와 아마존에 게시된 이미지를 일괄 복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내지 통보를 받고 바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들은 처음부

터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E의 공연 사진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의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E의 순수 공연 예술가로서 이미지가 실추되었거나 훼손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 불인정

(1)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 불가 - 저작권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불가

(2)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정신적 손해 불인정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9135 판결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십수년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